

행 정 자 치 부

훈계 · 시정 요구

제 목 공유재산(하천) 용도폐지 업무 처리 소홀

기 관 명 경상남도

관 계 기 관 경남도 본청, 창원군

관 련 자 창원군 ○○○○과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는 2016. 1. 1.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창원군 ○○○○과에서 창원군 고암면 원촌리 727-78 번지 공유재산 용도폐지 신청 건 관련 업무담당이었다.

경상남도 ○○과에서는 최근 3년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관리법」에 따라 120건의 용도폐지 신청 건을 접수하여 그 중 65건은 승인하고 55건은 불가처분을 하였으면 불가처분 내용 중 5건에 대해서는 신청 토지 내내 불법 건축물이 존치하고 있다는 사유로 불가 처분하였다.

〈용도폐지 불가처분 통보 현황〉

연번	재 산 현 황				폐지 여부	불 가 사 유	시정조치 (처리상황)
	소 재 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		
계	용도폐지 5건			1,914			
1	창녕군 ○○면 ○○리	728-78	대	348	재신청	시설물 철거 약속서	민원인 요청 보류
2	고성군 ○○면 ○○리	1611-124	전	134	불가	불법 건축물	사용료 부과
3	김해시 ○○면 ○○리	1200-24	천	1,679	불가	불법 건축물	'16.1.7 재신청 용도폐지
4	밀양시 ○○동	963-37	대	195	불가	불법 건축물	사용료 부과
5	남해군 ○○면 ○○리	2156-29	천	40	불가	불법 건축물 및 하천구역 저축	사용료 부과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3조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, 도랑·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

「같은 법」 제44조(대장과 실태조사) 2항에 의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관리관은 매년 소관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,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 또한 「같은 법」 시행령 제49조(공유재산의 관리 등)에 따라 공유재산 대장은 그 구분과 분류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갖추 두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창녕군 ○○과(현, ○○○○과)에서는 (연번 1)에 대하여 1995.12.19. 경상남도로부터 폐천부지로 승인(용도폐지)받고, 1996년 전체면적 581㎡에 대한 매각 절차 당시 창녕군 고암면 소재 ○○○가 310만 원에 낙찰하여 개인사정에 의해 233/581㎡에 해당되는 128만 원만 계약하였으나

이는 창녕군에서 유찰 후 재입찰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고 지분등기(233/581㎡-○○○, 348/581㎡-경상남도)처리하였으며, 이후 1998.5.29. 창녕군 ○○○과(현, ○○○○과)에서 위 지번에 대하여 728-78(348㎡)과 728-109(233㎡)로 분할 완료 후 등기하였으나 등기관련 전문지식 부족으로 공유물 분할등기를 하지 않고 분할등기⁶⁵⁾만 처리하여

결과적으로 금번 728-78(348㎡)에 대한 민원인의 용도폐지 신청(2016. 7. 6.)사항에 대하여 이미 용도 폐지된 토지⁶⁶⁾임에도 경남도와 창녕군이 공유재산의 대장정리 작성 소홀과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착오로 행정재산인 것만을 확인하고 용도폐지 불가(2016. 8. 12.) 통보하는 등 공유재산관리 업무를 소극적

65) 728-78, 728-109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소유권(경남도, ○○○) 정리와 공유물 분할등기(348/581㎡, 233/581㎡) 없이 일반 분할 후 등기부등본만 만들었음.

66) 728-78, 728-109는 ○○○에서 ○○○로 소유권이전 되었으며 실제 ○○○에게 매입한 토지는 728-109(233㎡)이나, ○○○의 건물이 점유하는 토지는 728-78(348㎡)로서 금번에 재차 용도폐지 신청된 토지임.

으로 운영하여 민원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였다.

아울러 연번 2 내지 연번 5에 대한 민원인의 용도폐지 신청과정에서 고성군, 김해시, 밀양시, 남해군에서는 현장 확인 후 불법건축물 또는 하천저축이 의심이될 경우 현지출장 및 경계측량 등을 통하여 사전에 용도폐지 여부를 정확히 검토한 후 경상남도에 용도폐지 신청하여야 하나 민원인이 신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용도폐지 신청하여 경상남도로부터“불가처분”되는 등 위시·군의 소극적인 업무처리 형태로 인하여 민원의 불편을 초래하였으며, 경상남도 ○○과에서는 위 현황 공유재산에 대한 시·군의 용도폐지 요청 사항을 검토하면서 불법 건축물에 대한 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제대로 지시하지 않는 등 공유 재산의 용도폐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사실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경상남도지사는

[시정] 앞으로 도와 시·군 공유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대장정리 등을 하시고, 아울러 유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(천) 용도폐지 신청·처리 등 지도·감독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

경상남도 창녕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대장 정리를 하시고, 아울러 유사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유재산(천) 용도폐지 업무에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